◉환경부령 제91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04월 01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하는 시설
2.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농약관리법」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9. 「항공보안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

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34호의 공항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안전성향상계획(이하 "안전성향상계획"이라 한다)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이하 "공정안전보고서"라 한다)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

2.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⑥ 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완료일 3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 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⑦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이하 "총괄영향범위"라 한다)가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으로서 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일시적인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물질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⑧ 법 제2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

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

⑨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최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방법 및 제출, 변경제출의 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1항, 제4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가위험도·나위험도 및 다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 여부 등을 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중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③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현장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3.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시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일시·목적·항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통보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로 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수정·보완한 자료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자가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수정·보완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역사회와의 공조 및 주민의 보호·대피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방법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점검: 1년 주기
2. 현장점검(가위험도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해당한다): 5년 주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 특별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2.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점검 결과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
3.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유해화학물질이나 공정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 점검 결과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내용·방법·시기 및 점검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개별통지 방법: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설명 방법: 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전달 방법: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

4. 그 밖의 고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반상회보·소식지 게재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2.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3.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이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9조제7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고위험도"를 "가위험도"로, "제19조제7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위험도"를 "나위험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저위험도"를 "다위험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적합 통보일부터 매 12년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⑤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용량·위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용량”을 “용량이 증가된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사용량”을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품목(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소재지”를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영업자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를 “영업자가”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이하 “장외 평가정보”라 한다)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는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를 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제6항(종전의 제3항) 중 “별지 제45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을 “별지 제45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받은 이후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제29조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로 한다.

제31조제4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제31조제5호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운영하는 자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자

제37조제2항 본문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 한다.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6월 30일”을 “8월 31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4조제1항제5호 중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준수”를 “이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3, 제5호의4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2021년 6월 30일
2.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2021년 6월 30일
3.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점검: 2021년 6월 30일

4.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2021년 6월 30일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5의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의2 제3호다목 중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등의 재난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수시기 및 교육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별표 6의3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 마목 중 “장외영향평가와 안전성 향상 방안”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으로 한다.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업장 위험도 분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6의3 제3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별표 7 제1호라목6) 중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상태를 평가”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1호”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2호”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3호”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4호”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서목 및 어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부터 버목까지를 카목부터 어목까지로 하고,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8호의2					
1)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른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일	15일	15일	
2)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1개월	
차. 법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제1항제5호의2, 법 제35조제2항제8호의3	개선 명령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개월	

별표 7 제2호타목(종전의 차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4조제4항”을 각각 “법 제24조제5항”으로,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법 제24조제5항”을 “법 제24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거목(종전의 파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7호”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호 더목(종전의 거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8호”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호 서목(종전의 머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9호”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호 어목(종전의 버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10호”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10호”로 하며, 같은 호 처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12호”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12호”로 하고, 같은 호 커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13호”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13호”로 한다.

별표 10 및 별표 1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의 보고사항란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표의 위해관리계획서의 운영 현황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 제31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위해관리계획 수립대상 여부”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출 대상 여부”로,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라목, 제47조의2 및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통보받은 자의 취급시설의 위험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고위험도 취급시설: 가위험도
2. 중위험도 취급시설: 나위험도
3. 저위험도 취급시설: 다위험도

제5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해야 한다.

[별표 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

1.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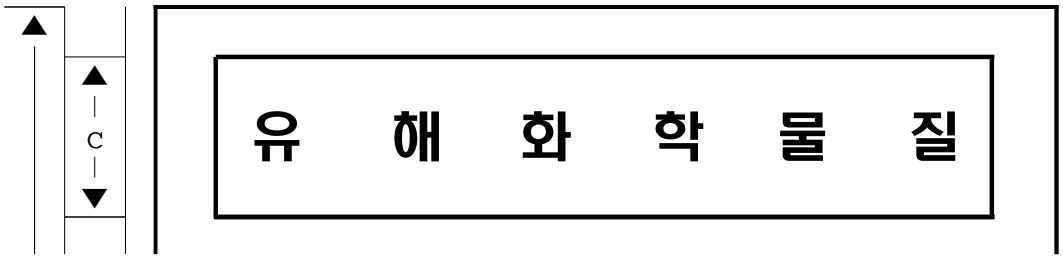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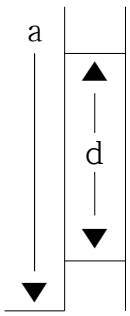

관리책임자 : 0 0 0 (성명)
비상전화 : 00-000-0000
(000-0000-0000) (연락처)

물질명	국제연합번호	그림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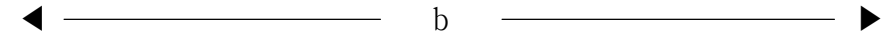

나. 양식크기: a=50㎝ 이상, b=(3/2)a, c=(1/4)a, d=(1/4)a

다. 글자크기: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라. 색상: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는 빨간색으로 하고, 관리책임자와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해야 한다.

마.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의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2.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에 표시하는 경우

가. 1톤 초과 운반차량의 경우

1) 양식

(옆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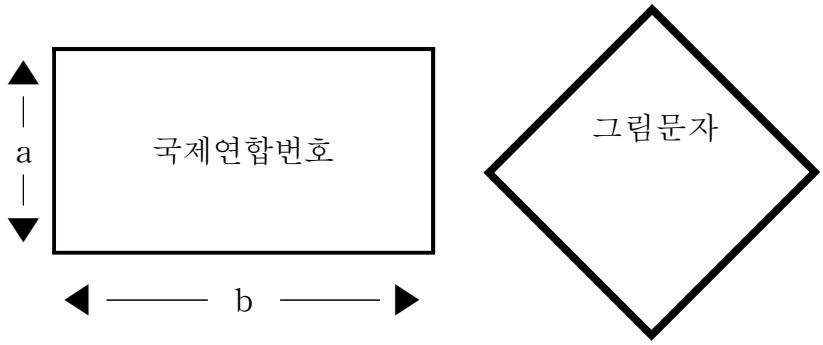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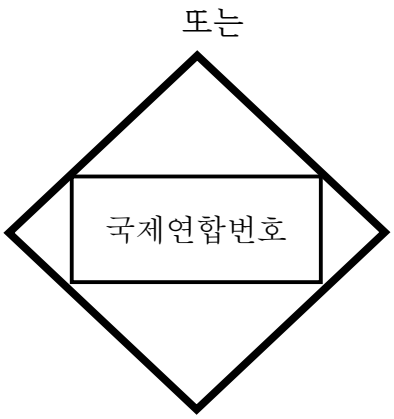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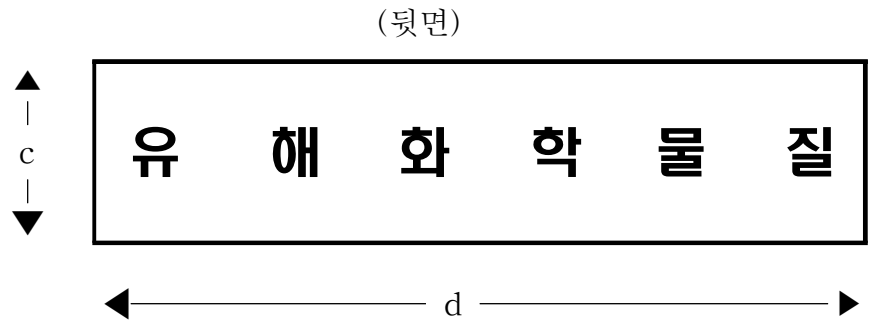

2) 양식크기

가) 1톤 초과 4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12㎝ 이상, a=10㎝ 이상, b=25㎝ 이상, c=12cm 이상, d=50cm 이상으로 한다.

나) 4톤 초과 운반차량의 경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20㎝ 이상, a=10㎝ 이상, b=25㎝ 이상, c=20~30cm, d=80~100cm로 한다.

3) 글자크기: 국제연합번호의 글자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그림문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RTDG),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항공안전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기준에 따른 운송그림문자(이하 "운송그림문자"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림문자와 관련된 유해성·위험성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7)의 유해성·위험성 우선순위가 높은 두 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국제연합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할 수 있다.

5) 색상: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는 검정색으로 하고, 뒷면의 유해화학물질 글자는 빨간색으로, 국제연합번호의 바탕은 주황색으로 해야

한다.

6) 표시위치: 양 옆면과 뒷면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를 부착 또는 각인해야 한다.

7) 유해성·위험성 우선순위

가) 방사성 물질

나) 폭발성 물질 및 제품

다) 가스류

라) 인화성 액체 중 둔감한 액체 화약류

마) 자체 반응성 물질 및 둔감한 고체 화약류

바) 자연 발화성 물질

사) 유기과산화물

아) 독성물질 또는 인화성 액체류

비고

1톤 초과 1.5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제2호가목의 표시방법을 이행하는 데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할 때에는 제2호나목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나. 1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1)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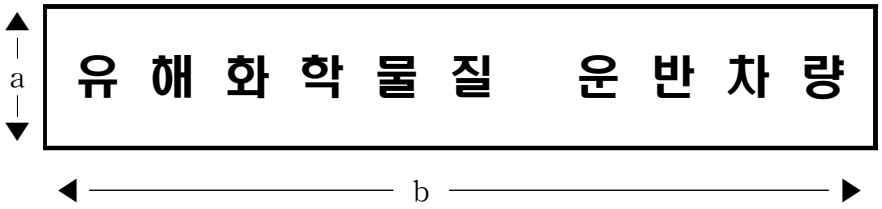

2) 양식크기: a=10~20cm, b=30~80cm 이어야 한다.

비고

국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기준」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3.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일반 작성 원칙

1) 표시 방법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명칭은 물질명(또는 일반명) 및 고유번호(또는 CAS번호)를 기재한다. 혼합물인 경우에는 제품이름(또는 혼합물의 이름) 및 유해화학물질의 함량(%)을 추가로 기재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가)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X자형 뼈”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나)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다)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4) 신호어는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하되,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5) 유해위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가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이 가능하며, 유사한 유해위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예방조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는 예방조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예방조치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가장 엄격한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다.

7)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는 해당 문구를 표시하되 코드번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8) 공급자정보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한다.

9)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나. 양식 및 규격

1) 양식

명칭

그림문자

o 신호어 :

o 유해위험문구:

o 예방조치문구 :

o 공급자 정보 :

2) 규격

가) 용기의 용량별 크기

용기・포장의 용량	크기
5ℓ 미만	용기・내부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5ℓ 이상 50ℓ 미만	90 ㎠ 이상
50ℓ 이상 200ℓ 미만	180 ㎠ 이상
200ℓ 이상 500ℓ 미만	300 ㎠ 이상
500ℓ 이상	450 ㎠ 이상

나) 그림문자의 크기는 전체 크기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한 0.5cm^2 이상이어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의 내용량이 100g 이하 또는 100㎖ 이하인 경우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라) 전체 크기의 바탕은 흰색 또는 용기·포장 자체의 표면색으로 하고,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용기·포장 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경우에는 글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해야 한다.

마) 1ℓ 미만의 소량 용기로서 용기에 직접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용기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만 용기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다.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의 양식 및 규격

1)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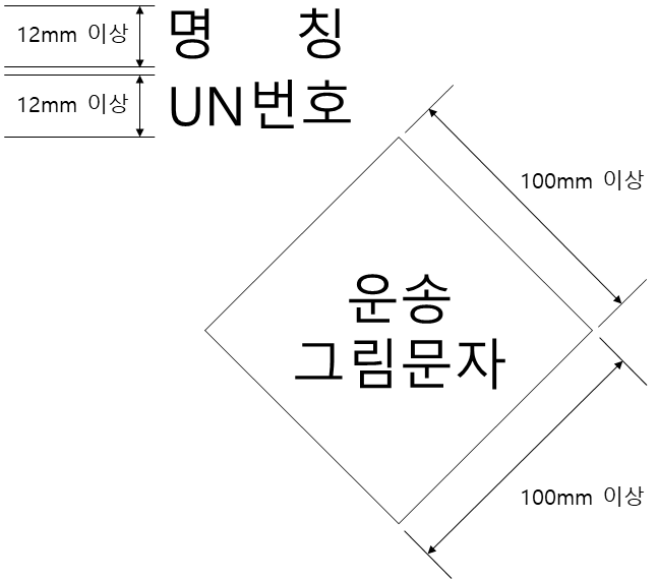

2) 규격

가) 그림문자의 크기는 100㎜×100㎜ 이상의 마름모꼴로 한다.

나) 명칭 및 UN번호의 문자높이는 12㎜ 이상으로 하되, 용량이 30ℓ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30㎏ 이하인 포장화물 및 수용량이 60ℓ 이하인 실린더

의 경우에는 6㎜ 이상의 높이여야 하며, 용량이 5ℓ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5㎏ 이하인 포장화물인 경우에는 적절한 높이여야 한다.

다) 명칭을 기재할 때 고유번호(또는 CAS번호)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혼합물인 경우)은 제외할 수 있다.

라. 표시방법

1) 이중용기(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외부용기

외부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나) 내부용기

내부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운송그림문자로 대체할 수 있다.

비고

가) "이중용기"란 1개의 용기 안에 1개 이상의 용기가 들어 있는 용기를 말한다.

나) "외부용기"란 이중용기에서 가장 바깥쪽의 용기를 말한다.

다) "내부용기"란 운반을 위하여 외부용기가 필요한 용기로 외부용기 내부의 모든 용기를 말한다.

2) 단일용기(이중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그림문자와 조합하여 하나의 표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운송그림문자와 같은 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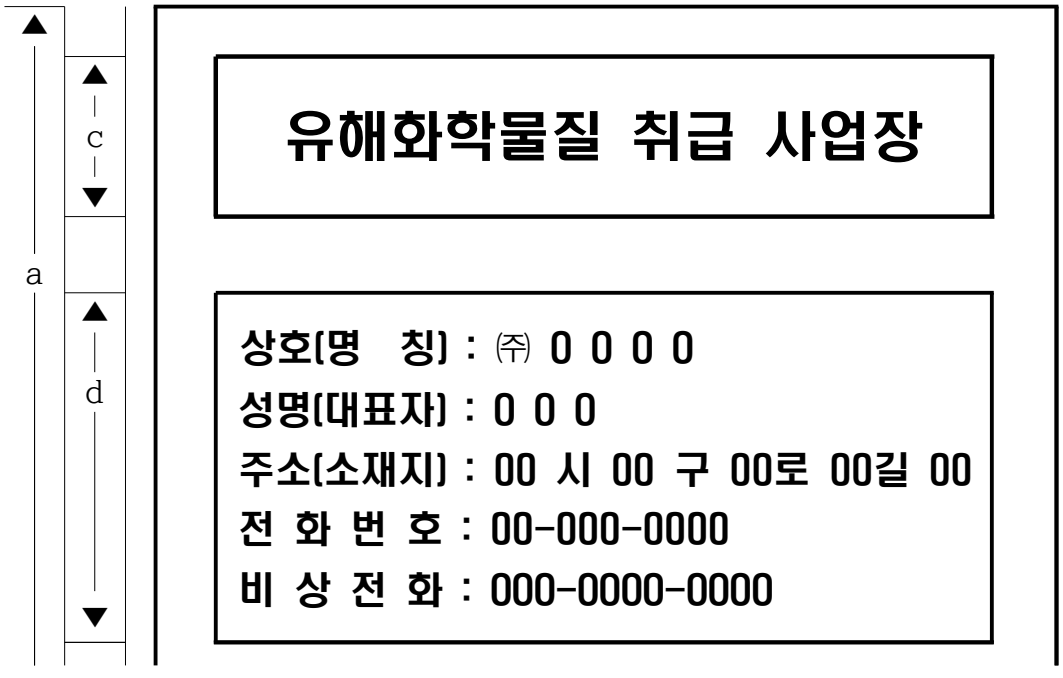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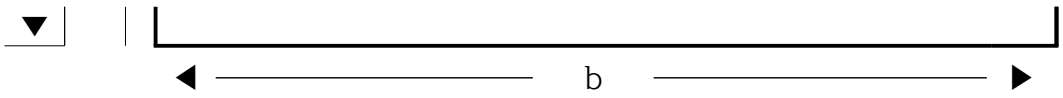

나. 양식크기: a=50㎝ 이상, b=(3/2)a, c=(1/4)a, d=(1/2)a

다. 글자크기: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색상: 바탕은 흰색으로,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글자는 빨간색으로,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해야 한다.

마.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출입구, 사업장의 부지경계선 등 외부로부터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방향일 때에는 그 장소마다 게시해야 한다.

[별표 3]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제12조제3항 관련)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물리적 위험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폭발성 물질”이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나. “인화성 가스”란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와 섭씨 54도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다. “에어로졸”이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페이스트·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라. “산화성 가스”란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를 말한다.

마. “고압가스”란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바. “인화성 액체”란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를 말한다.

사. “인화성 고체”란 쉽게 연소되는 고체(분말, 과립상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로 성냥불씨와 같은 점화원을 잠깐만 접촉하여도 쉽게 점화되거나, 화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물질을 말한다)나 마찰에 의해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아.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이란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자. “자연발화성 액체”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한다.

차. “자연 발화성 고체”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카.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이란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이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파. “산화성 액체”란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를 말한다.

하. “산화성 고체”란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거. “유기과산화물”이란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개의 -O-O- 구조를 갖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을 말한다.

너. “금속부식성 물질”이란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3. 건강 유해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급성독성 물질”이란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이란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이란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라.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이란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마. “생식세포 변이원성(變異原性) 물질”이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바. “발암성 물질”이란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사. “생식독성 물질”이란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아.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1회 노출)”이란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사적(非致死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정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자.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반복 노출)”이란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차. “흡인 유해성 물질”이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4. 환경 유해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나. “오존층 유해성 물질”이란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에 등재된 모든 관리대상 물질을 말한다.

[별표 3의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 관련)

1.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단위: 톤)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하위 규정수량	상위 규정수량
1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Formalin; Formaldehyde ; 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2	메틸히드라진(메틸하이드라진)[Methylhydrazine ; 60-3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0
3	포름산(폼산)[Formic acid ; 64-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4	메틸알코올[Methylalcohol ; 67-56-1]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5	벤젠[Benzene ; 71-43-2]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6	염화메틸[Methyl chloride ; 74-8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7	메틸아민[Methylamine ; 74-8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8	시안화수소(사이안화수소)[Hydrogen cyanide ; 74-9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6	3
9	염화비닐(염화 바이닐)[Vinyl chloride ; 75-01-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10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 75-15-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1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 75-21-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2	포스겐[Phosgene ; 75-4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13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 75-5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4	산화 프로필렌[Propylene oxide ; 75-56-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5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 78-9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16	메틸비닐케톤[Methyl vinyl ketone ; 78-9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0
17	아크릴산[Acrylic acid ; 79-1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18	메틸아크릴레이트[Methyl acrylate ; 96-3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19	니트로벤젠(나이트로벤젠)[Nitrobenzene ; 98-9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20	4-니트로톨루엔(4-나이트로톨루엔)[4-Nitrotoluene ; 99-9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21	벤질클로라이드[Benzyl chloride ; 100-4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0
22	아크롤레인[Acrolein ; 107-02-8]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0
23	알릴클로라이드[Allyl chloride ; 107-0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24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로나이트릴)[Acrylonitrile ; 107-13-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25	에틸렌디아민(에틸렌다이아민)[Ethylenediamine ; 107-1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0
26	알릴알코올[Allyl alcohol ; 107-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27	m-크레졸(m-크레솔)[m-Cresol ; 108-39-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8	40
28	톨루엔[Toluene ; 108-88-3]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29	페놀[Phenol ; 108-95-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8	40
30	n-부틸아민(n-뷰틸아민)[n-Butylamine ; 109-73-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31	트리에틸아민(트라이에틸아민)[Triethylamine ; 121-4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32	아세트산에틸[Ethyl acetate ; 141-7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33	시안화나트륨(사이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 143-3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	2	20

	청(Ferric ferrocyanide)·황혈염(Potassium ferrocyanide)·적혈염(Potassium ferri-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한다.		
34	에틸렌이민[Ethylenimine ; 151-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
35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2,4-TDI) ; 584-84-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36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 630-0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37	아크릴로일클로라이드[Acryloyl chloride ; 814-6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
38	인화아연[Zinc phosphide ; 1314-84-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39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 1338-23-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40	디이소시안산이소포론(다이아이소사이안산 아이소포론)[Isophorone diisocyanate ; 4098-7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41	나트륨[Sodium ; 7440-2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4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 7647-01-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5*	400*
43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린화 수소)[Hydrogen fluoride ; 7664-3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4*	20*
44	암모니아[Ammonia ; 7664-41-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20*	400*
45	황산[Sulfuric acid ; 7664-9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0
46	질산[Nitric acid ; 7697-37-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0
47	삼염화인[Phosphorus trichloride ; 7719-1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0
48	불소[Fluorine ; 7782-4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49	염소[Chlorine ; 7782-5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50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 7783-0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51	아르신 또는 삼수소화비소[Arsine; Arsenic trihydride ; 7784-42-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52	클로로술폰산(클로로설폰산)[Chlorosulfonic acid ; 7790-94-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53	포스핀[Phosphine ; 7803-5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54	옥시염화인[Phosphorus oxychloride ; 10025-8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55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 10049-04-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
56	디보란(다이보레인)[Diborane ; 19287-45-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57	산화질소[Nitric oxide ; 10102-4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58	니트로메탄(나이트로메테인)[Nitromethane ; 75-52-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59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 6484-52-2] 및 이를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0	헥사민[Hexamine ; 100-97-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2	60
61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 7722-84-1] 및 이를 3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2	염소산칼륨[Potassium chlorate ; 3811-04-9]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0
63	질산칼륨[Potassium nitrate ; 7757-79-1]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4	과염소산칼륨[Potassium perchlorate ; 7778-7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0
65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 7722-6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00
66	염소산나트륨[Sodium chlorate ; 7775-09-9]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0
67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 ; 7631-99-4]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8	사린[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 107-44-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69	염화시안[Cyanogen chloride ; 506-77-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70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 13463-39-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71	모노게르만 또는 사수소화게르마늄[(Germane ; Germanium tetrahydride ; 7782-65-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2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Tetrafluoroethylene ; 116-14-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3	트리플루오로보란(트라이 플루오로 보란)[Trifluoroborane ; 7637-0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74	트리클로로붕소[Boron trichloride ; 10294-3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75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헥사플루오로-1,3-뷰타다이엔)[Hexafluoro-1,3-butadiene ; 685-6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6	브롬[Bromine ; 7726-9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77	세렌화수소(셀레늄화 수소)[Hydrogen selenide ;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8	이소프렌(아이소프렌)[Isoprene ; 78-7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79	1,1-디클로로에틸렌(1,1-다이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 75-35-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0	헥사메틸디실록산[Hexamethyl disiloxane ; 107-4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1	펜타카르보닐철[Pentacarbonyl iron ; 13463-40-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2	오불화브롬[Bromine pentafluoride ; 7789-3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3	염화티오닐(염화싸이오닐)[Thionyl chloride ; 7719-0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4	사염화타이타늄(사염화타이타늄)[Titanium tetrachloride ; 7550-4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5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6	비닐에틸에테르[Vinyl ethyl ether ; 109-9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87	실란(실레인)[Silane ; 7803-62-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88	디실란(다이실레인)[Disilane ; 1590-87-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89	디클로로실란(다이클로로실레인)[Dichlorosilane ; 4109-96-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90	트리클로로실란(트라이클로로실레인) [Trichlorosilane ; 10025-78-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1	메틸디클로로실란(메틸다이클로로실레인) [Methyldichlorosilane ; 75-5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2	메틸트리클로로실란(메틸트라이클로로실레인) [Methyltrichlorosilane ; 75-79-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3	트리클로로비닐실란[Trichlorovinylsilane ; 75-9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4	에틸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ethylsilane ; 115-21-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5	테트라메틸실란(테트라메틸 실레인) [Tetramethylsilane ; 75-76-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6	테트라클로로실리콘(테트라클로로실리콘)[Silicon Tetrachloride; 10026-0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7	테트라플루오로실리콘[Silicon tetrafluoride ; 7783-6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수량 기준(각 물질별 하위 규정수량과 상위 규정수량 기준을 말한다)은 환경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1. 규정수량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에서 최대로 체류(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수량에도 불구하고 42번, 43번 및 44번의 물질은 상온·상압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표시된 값을 규정수량으로 한다.
3. 규정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제19조제3항 관련)

1. 기본정보

가. 사업장 일반정보

1) 사업장 일반정보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1군·2군 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취급시설 개요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장치·설비의 종류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1)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명세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 유해화학물질별 물리적·화학적 성질 및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른 구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대표 유해성 정보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유해성이 가장 큰 대표 물질 2종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정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취급시설의 입지정보

1) 취급시설의 입지정보는 전체배치도, 설비배치도 및 주변 환경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전체배치도는 사업장 내 건물 및 설비의 위치, 건물 간 거리, 단위공정 또는 단위공장 배치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설비배치도는 단위공정 또는 단위공장별로 각 설비의 위치, 주요 설비의 설치 높이, 각 설비 간 거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전체배치도상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4) 주변 환경정보는 사업장 인근 지역 시설물의 위치도·명세, 주민분포 현황 및 자연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시설정보

가. 공정안전정보

1) 공정안전정보는 공정개요, 공정도면, 장치·설비의 목록 및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2) 공정개요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절차·방법의 흐름에 따라 공정설명 자료를 작성한다.

3) 공정도면에는 주요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주요 계측장비 및 제어 설비, 물질 및 열에너지 수지,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등의 사항들이 포함된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를 작성하고, 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들이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를 추가로 작성한다.

4) 장치·설비의 목록 및 명세는 단위공정별로 장치 및 설비의 명칭과 용량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안전장치 현황

1) 안전장치 현황은 확산방지 설비 현황 및 배치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명세 및 배치도,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확산방지 설비 현황 및 배치도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누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벽 및 트렌치 등 시설의 목록, 용량 및 배치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3)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명세 및 배치도는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의 고정식 유해감지시설의 종류와 설치위치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는 단위공정별로 적정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5)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은 스크러버(scrubber: 세정기) 및 플레어 스택(flare stack: 배출가스

연소탑) 등 배출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이 적정한 성능과 용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장외 평가정보

가. 사고시나리오 선정

취급시설의 용량 및 취급시설별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고시나리오 작성대상 설비를 선정하여 예비위험 분석기법을 적용한 공정위험성 분석을 하고,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대상 설비와 사업장의 총괄영향범위를 산정하는 내용 등을 작성한다.

나. 사업장 주변지역 사고영향평가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총괄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 수,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목록 등 현황 및 사고영향의 분석·평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위험도 분석

사고시나리오별 사고 영향과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 후 작성한다.

4. 사전관리방침

가. 안전관리계획

1)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운영계획, 안전관리계획의 실행 및 변경관리,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계획 및 자체점검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안전관리운영계획은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관리 방침과 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의 실행 및 변경관리는 수립된 계획의 주기적인 검토 및 개선·보완, 변경사항 발생 시 현행화를 위한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계획은 화재·폭발, 독성물질 누출, 환경오염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대상 및 횟수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5) 자체점검계획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비상대응체계

1) 비상대응체계는 비상연락체계와 비상대응조직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2) 비상연락체계는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대응 담당자, 공동 대응을 위해 연락 가능한 인근 사업장, 유관기관의 목록 및 신고·연락 체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비상대응조직도는 사고 대응·수습·복구 단계별 대응 부서별 편성인원과 임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내부 비상대응계획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

1)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은 화학사고 발생 시 가동중지 권한 및 절차, 방재 인력·장비·물품 운용계획, 사업장 내부 경보전달체계 및 응급조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방재 인력·장비·물품 운용계획은 화학사고 발생 시 투입되는 방재인력 및 장비 현황, 개인보호구 등의 물품 보유현황, 방재장비·물품 배치도 및 관리·유지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사업장 내부 경보전달체계는 경보시설의 종류・유지관리방법 및 경보전달 방법・담당자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응급조치계획은 저장, 운반(탱크로리)・이송(배관), 보관시설, 반응・교반 등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정별로 화학사고 발생 시 자동 차단 또는 단계별 차단, 확산방지 및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과 비상대피계획 및 응급의료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화학사고 사후조치

1) 화학사고 사후조치는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계획과 사고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계획은 사고조사팀의 구성・임무,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항목・방법 및 개선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사고복구계획은 사고현장을 복구하기 위한 조직・임무, 환경책임보험 가입이력 및 가입여부 및 환경복원전문업체의 활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6. 외부 비상대응계획

가. 지역사회 공조계획

화학사고의 예방・대비・대응・수습・복구를 위한 정보 공유, 지역사회와의 소통, 화학사고 발생 시 공동대응 등 지역사회・지역비상대응기관・인근사업장 등과의 공조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1)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은 주민에 대한 대피경보 및 전달체계,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행동요령, 응급의료계획 및 주민대피 장소・방법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경보 및 전달체계는 경보시설의 종류 및 유지관리방법, 경보전달 방법・담당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보전달체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3)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행동요령은 사고유형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대피 시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응급의료계획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목록 및 비상연락망, 사업장과의 거리, 이동경로, 이동시간, 수용가능 병상, 환자후송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주민대피 장소・방법은 집결지와 대피장소를 구분하여 사업장과의 거리, 이동경로, 이동시간, 수용가능 인원, 실내・지상・지하 여부, 「재해구호법」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해당 여부, 수송계획, 비상연락망 및 대피장소관리 담당자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지역사회 고지계획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대상이 되는 사고시나리오별 총괄영향범위 내 주민의 목록 및 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고지정보는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된 내용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작성한다.

비고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전체 단위로 작성하며, 사업장의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운영단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단위별로 구분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제1호가목1)의 1군·2군 사업장의 구분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사업장 구분	기준
가.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제19조제8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
나.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으로서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3.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호에 따른 외부 비상대응계획을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다.

4. 제4호나목, 제5호 및 제6호의 작성 항목을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와 해당 항목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제6호에 따른 외부 비상대응계획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활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다.

6.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제출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제출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운반업체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운반차량번호)
	운반자 성명 및 연락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유해화학물질명	함량(%)	수량(kg)	휴대용 방재장비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28호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운반업체는 실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업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운반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제출인				유역(지방)환경청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제출방법 [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 ] 서면

신청인	상호(명칭)	담당자 정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취급시설 소재지 관할지방환경관서 : ( ) 유역(지방)환경관서 / ( )합동방재센터		

신청내용	제출구분	[ ] 신규제출 [ ] 재제출	[ ] 부적합 후 재제출
		[ ] 5년 재제출	[ ] 이행점검 부적정 재제출
	사업장 구분	[ ] 1군 사업장	[ ] 2군 사업장
	영업허가 대상	[ ] 영업자(영업허가 대상)	[ ] 비영업자(영업허가 면제대상)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 여부	[ ] 해당	[ ] 미해당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검토생략 대상	[ ] 안전성향상계획 [ ] 공정안전보고서	[ ] 미해당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4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통지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서 통보
신청인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신청인 정보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취급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2.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 개요

총괄 사업장		총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대상 지역		대상 산업단지	
대상 사업장 수		최종 작성일	
공동활용 비상대응정보	[ ] 사고영향범위 공유	[ ] 지역사회 공동 고지	
	[ ] 사고전파·알림 지원	[ ] 방재자원 및 대응 지원	
	[ ] 실내 대피장소 지원	[ ] 공동 사고대응훈련 실시	
	[ ] 기타 (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제출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심사 결과 확인	종류 [ ] 안전성향상계획 [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관
	대상 공장(공정)	심사결과 통지일
	대상 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결과 통지 후 변경사항이 없음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제출일	접수일	처리기간(30일)

제출방법 [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 ] 서면

신청인	상호(명칭)		담당자 정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취급시설 소재지			
	(최종) 적합통보 번호		(최종) 적합통보 일자	
	영업허가 대상 여부	[ ] 영업자 [ ] 비영업자		

변경 사항	[ ] 사업장 구분 변경: 변경 전 ( ) 군 사업장, 변경 후 ( )군 사업장 [ ] 그 밖의 사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 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서 통보
신청인				화학물질안전원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상세내용>

장외영향평가서 민원번호	결과번호	적합날짜	위험도

위해관리계획서 민원번호	결과번호	적합날짜

※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제출 이력>

적합 결과번호	사업장 구분 (1군/2군)	위험도	상세내용	적합통보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사항 상세내용>

변경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품목추가		
시설추가		
취급저장량 증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table>
<tr><td colspan="2">결과번호</td><td colspan="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td></tr>
<tr><td rowspan="4">신청
정보</td><td>상호(명칭)</td><td></td><td rowspan="3">담당자
정보</td><td>성명</td><td></td></tr>
<tr><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d>연락처</td><td></td></tr>
<tr><td>대표자 성명</td><td></td><td>전자우편 주소</td><td></td></tr>
<tr><td>취급시설 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사업장 구분</td><td colspan="4">[ ] 1군 사업장 [ ] 2군 사업장</td></tr>
<tr><td colspan="2">영업허가 대상 여부</td><td colspan="4">[ ] 영업자 [ ] 비영업자</td></tr>
<tr><td colspan="2">대상물질</td><td colspan="4">( ) 종</td></tr>
<tr><td colspan="2">결과</td><td colspan="4">[ ] 적합 [ ] 조건부적합 [ ] 부적합</td></tr>
<tr><td colspan="2">위험도</td><td colspan="4">[ ] 가 [ ] 나 [ ] 다 [ ] 해당 없음</td></tr>
</table>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첨부서류	검토결과 상세내용 1부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table>
<tr><td colspan="2">결과번호</td><td colspan="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td></tr>
<tr><td rowspan="4">신청
정보</td><td>상호(명칭)</td><td></td><td rowspan="3">담당자
정보</td><td>성명</td><td></td></tr>
<tr><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d>연락처</td><td></td></tr>
<tr><td>대표자 성명</td><td></td><td>전자우편
주소</td><td></td></tr>
<tr><td>취급시설 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사업장 구분</td><td colspan="4">[ ] 1군 사업장 [ ] 2군 사업장</td></tr>
<tr><td colspan="2">영업허가 대상</td><td colspan="4">[ ] 영업자 [ ] 비영업자</td></tr>
<tr><td colspan="2">변경 사항</td><td colspan="4">[ ] 사업장 구분 변경 : 변경 전 ( ) 군 사업장, 변경 후 ( ) 군 사업장
[ ] 그 밖의 사유 : ( )</td></tr>
<tr><td colspan="2">대상물질 수</td><td colspan="4">( )종</td></tr>
<tr><td colspan="2">검토 결과</td><td colspan="4">[ ] 적합 [ ] 조건부적합 [ ] 부적합</td></tr>
<tr><td colspan="2" rowspan="2">위험도</td><td colspan="4">위험도 변경 여부 [ ] 동일 [ ] 변경</td></tr>
<tr><td colspan="4">위험도 수준 [ ] 가 [ ] 나 [ ] 다 [ ] 해당없음</td></tr>
</table>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첨부서류	검토결과 상세내용 1부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

(앞쪽)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보완요청서

요청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담당자 정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취급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구분		[ ] 1군 [ ] 2군			
대상물질수					
수정·보완 제출 기한		년 월 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수정·보완 요청 사항 명세		
연번	검토항목	수정·보완 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양식)

점검연월일	점검시간 (00:00 ~ 00:00)	소속	점검자성명	서명

점검 항목	이상 유무	비고
①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②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③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④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⑤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⑥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⑦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⑧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⑨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⑩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⑪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비고

1. 비고란에는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된 사항 또는 재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하려는 자는 양식의 점검 항목이 모두 포함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점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297㎜×210㎜[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유해화학물질 [ ] 제조업 [ ] 운반업 [ ] 판매업 [ ] 사용업 [ ] 보관·저장업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종	
	④ 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⑦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⑧ 취급시설 보유 여부	[ ] 없음 [ ] 소유 [ ] 위탁 [ ] 임차		
	⑨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⑩ 유해화학물질 품목명		⑪ 전체 연간 예상 취급량	톤 또는 ㎥
	⑫ 종업원 수	명	⑬ 사업장 면적	㎡
	⑭ 보관·저장시설 용량	톤 또는 ㎥	⑮ 운반시설 용량	톤 또는 ㎥
	⑯ 매출액(사업장)	억원		

⑰ 취급시설 현황	취급시설 번호 또는 명칭	용량 (톤, ㎥, ㎡)	취급 유해화학물질명

⑱ 관리자 공동 활용 여부	[ ] 단독 [ ] 공동	⑲ 취급시설 공동 활용 여부	[ ] 단독 [ ] 공동
⑳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 대상 [ ] 비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첨부서류	1. 적합 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자료 1부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1부 5.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1부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수수료 3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27,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을 제출합니다) 3. 후견등기부	

행동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③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⑩란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및 제품명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⑪란은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 예상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품목에 관계없이 적습니다.
4. ⑮란은 보유하고 있는 운반시설의 전체 용량을 적습니다.
5. ⑯란은 최근 3년 동안의 해당 사업장의 평균 매출액을 적습니다(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6. ⑰란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에 대해서만 적습니다.
7. ⑱란 및 ⑲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여부를 적습니다.
8. ⑳란은「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여부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	접수	⇒	검토	⇒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유역(지방)환경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적습니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영업종류 [ ] 제조업 [ ] 판매업 [ ] 보관·저장업 [ ] 운반업 [ ] 사용업	

변경사항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취급시설 변경완료일(해당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5. 시범생산 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6.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7.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할 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2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8,000원)

작성방법

1. 허가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시에 제출한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만 적되, 보관·저장시설의 용량 또는 제조·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을 적습니다.
3. ②란은 ①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필요시 현지확인	⇒	결재	⇒	변경사항을 기재한 허가증(신고증) 발급
신청인 (신고인)				유역(지방)환경청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도급인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수급인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도급 사항	도급 내용	
	도급 사유	
	유해화학물질 종류 및 취급량	
	취급시설의 종류 및 규모	
	도급기간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첨부서류	1. 신고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1부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부 3.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1부 4. 긴급 도급 사유서(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13,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1,700원)

작성방법

1. 신청인은 신고를 하는 자를 적습니다.
2. 도급인은 실제 도급을 준 자를 적습니다.
3. 수급인은 실제 도급을 받은 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서	⇒	접수	⇒	검토	⇒	필요시 현지 확인	⇒	결재
신고인				유역(지방)환경청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의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이 면제되는 시설의 종류를 정하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 이행 점검 및 지역사회 고지의 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에 관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